

알고 싶어요 자 본 시 장

한국거래소 | 알고 싶어요 시리즈 1



제1장 | 자본시장 개관 02

1. 금융시장의 구성 / 2. 자본시장이란? / 3. 자본시장의 기본구조
4. 자본시장의 역할

제2장 | 자본시장의 구조와 한국거래소의 역할 10

1. 한국 자본시장의 생성과 발전 / 2. 한국 자본시장 구조
3. 한국거래소의 기능과 역할

제3장 | 금융투자상품 17

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체계 / 2. 증권 종류 / 3. 증권의 발행방법
4. 파생상품 종류 / 5. 장내거래 금융투자상품 / 6. 간접투자 금융상품

제4장 |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회사 30

1. 금융투자업의 종류 / 2. 금융투자회사

제5장 |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 제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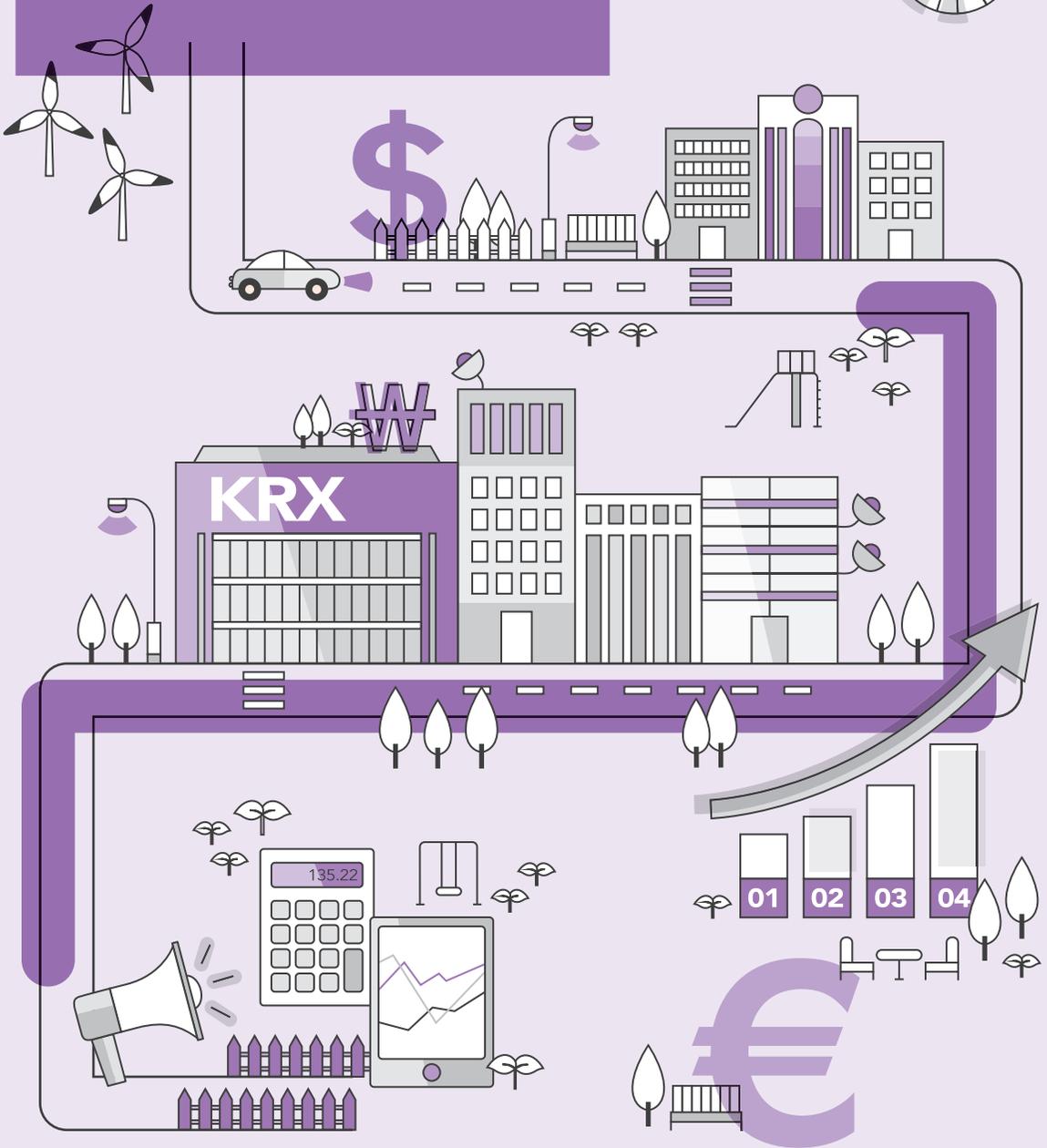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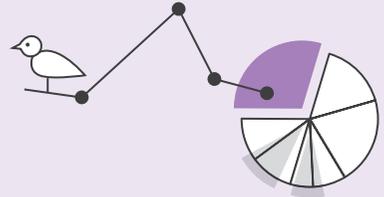
1.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 / 2. 기업내용공시
3.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등 규제 / 4.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규제
5. 금융투자상품 거래관련 분쟁조정



알고 싶어요

제1장

자본시장 개관



1. 금융시장의 구성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중개가 이루어지는 대출시장,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대출시장

대출시장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나 신용판매도 대출시장에 포함된다. 대출시장은 빌리는 측에 따라 기업대출시장과 가계대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전통적 금융시장

전통적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된다.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CMA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이 해당된다.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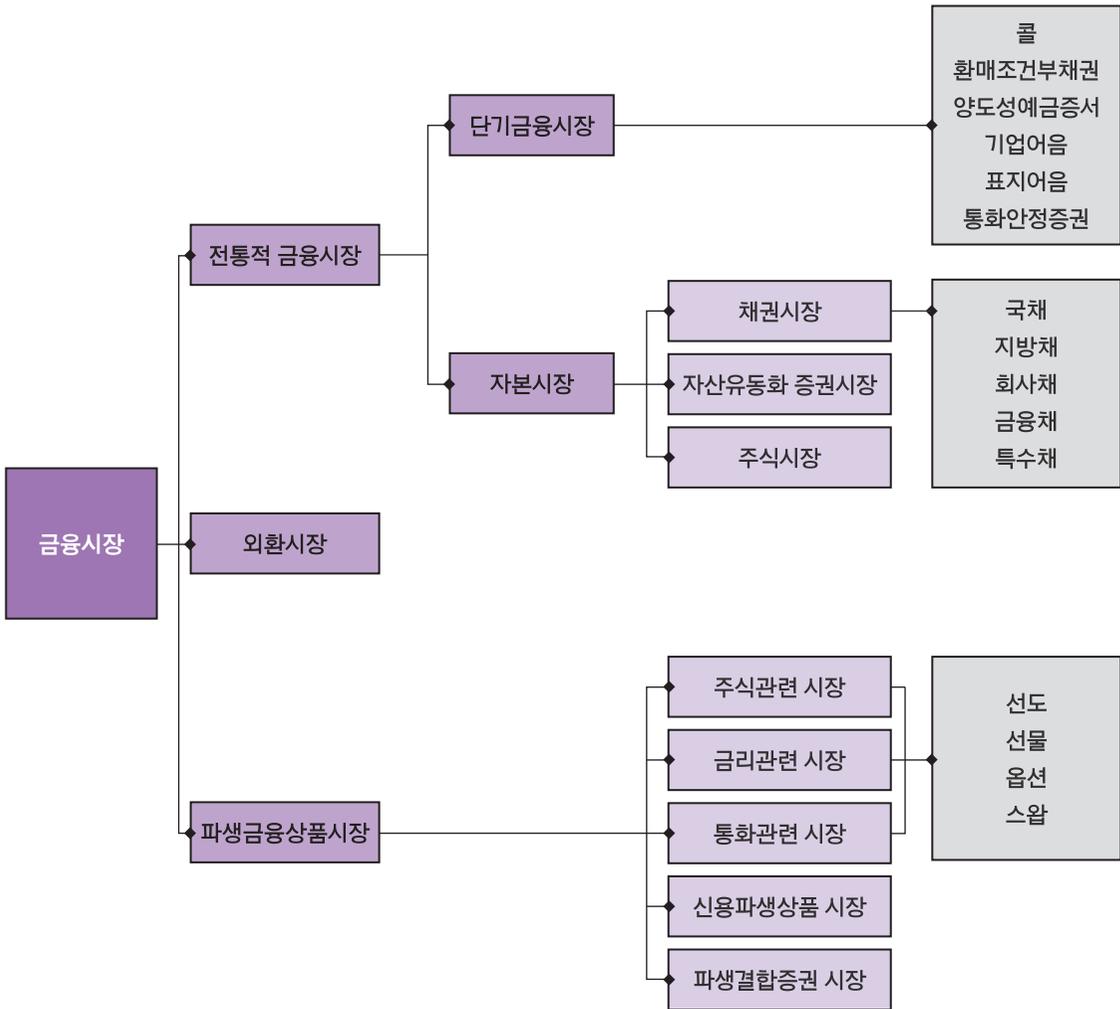
다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역규모 확대,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등에 힘입어 주로 원화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종통화 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은 전형적인 점두시장의 하나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 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은행 간 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의 참여에 대량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준환율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간시장을 말한다.

라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 금융상품 및 외환의 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



(출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2. 자본시장이란?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 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과 기관의 투자자금은 투자자 개인에게는 단순한 종자돈(Seed Money)에 지나지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경제기반을 유지하는 일종의 ‘혈액순환’과도 같다. 자금이 원활하게 좋은 기업으로 선순환돼 유입되면 경제발전이 이뤄지지만, 가치가 낮거나 건전하지 못한 기업으로 인해 자금이 막히고 빠져나가게 되면 국가경제도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시장의 무게 중심이 직접금융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부족부문과 자금잉여부문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있다.

자본시장은 회사채 수익률과 주가 등 금융자산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내부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회사채나 주식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예상투자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채나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3. 자본시장의 기본구조

자본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투자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당해 증권을 취득하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가 새로 발행한 증권과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교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증권의 발행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발행시장은 개인이나 기관이 가진 소규모의 투자자금을 증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대규모의 기업자금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발행시장은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발행인에는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고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며 인수인은 투자매매업자가 담당한다.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는 발행에 관한 사무절차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 직접발행은 증권의 발행주체가 직접 발행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지만 증권발행의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 전문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간접발행의 방법을 이용한다.

발행 중개기관의 이용은 증권발행에 관한 실무절차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발행시장에 관한 정보수집능력, 시장조성 능력, 발행증권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부담 능력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기관에는 증권의 인수, 매출 또는 모집을 주선할 수 있는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즉 증권회사, 은행 등이 있다.

나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춘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발행시장이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하여 유통시장은 투자자금에 환금성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증권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기업에서 장기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유통시장의 덕분이다.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통시장을 통하여 자신이 소유한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시장은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서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도와준다. 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새로 발행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유통시장은 증권의 유형에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거래소시장(일명 장내시장)과 조직화되지 않은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장내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중개업자인 증권회사가 주된 역할을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그 고객의 동의만 있으면 거래소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과거 채권의 경우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거래비중이 거래소시장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주식은 가격변동이 심하여 각자의 판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두 거래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관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같다.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대상이라 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시장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발행시장에서의 증권발행이 그 규모, 조건, 시기 등에 따라 유통시장의 시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야 그 시장성과 환금성이 보장되어 발행시장에서도 투자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의 시황에 따라 발행조건이 결정되게 되고, 그 발행조건에 따라 발행주체는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직접 발행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자본시장의 역할

가 자금조달 측면

기업은 생존·성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 경영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내부 유보금으로는 막대한 자금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은 이러한 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는 주경로이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작은 단위의 증권으로 나누어 발행하고, 이를 잉여자금을 가진 경제주체를 상대로 판매한다. 즉, 소액의 단기자금을 가진 일반대중으로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장기 산업자금을 조달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주식이나 채권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무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채권발행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현금흐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나 자산운용 측면

자본시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시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정될수록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며, 투자자의 욕구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상품은 유동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은행예금에서부터 수익성과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공하여 직접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금융자산의 운용측면에서 직접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기능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다 소유권분산 측면

자본시장 중 주식시장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업가의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다른 여러 주주와 나눠 갖게 하며, 동시에 기업가로 하여금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에 일정한 소유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주는 해당 기업에 자신의 부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게 된다. 그 결과 투자의 편중을 초래하여 투자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주식시장은 주식거래를 통하여 여러 기업의 주식을 다양하고 손쉽게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준다.

위험분산 욕구가 아니어도 기업이 대형화되면서 소유권의 분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업의 초기 단계에는 창업주가 모든 경영을 직접 지휘하며,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부자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주식시장을 통하여 새로운 주주의 출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고 경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경영권의 세습이 어려워지고 전문경영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이 주식시장의 발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라 시장의 효율성 측면

자본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여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경제시스템 안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수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내에서도 투자자금이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모이게 하여 시장경쟁에 의한 금융자원의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하는 기업은 경영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시장참가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준다. 이는 곧 시장경쟁에 의한 증권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금융시장 전체를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마 경제정의 측면

개인은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각자가 직접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하여 임금, 지대, 이자 등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주식시장은 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중요한 매개수단이다. 주주는 자본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소득에 대한 재분배권을 갖는다. 설사 일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독점할지라도 주식의 소유분산이 잘되어 있다면 그 기업의 성과는 많은 주주가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자본주의 국가가 주식분산을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량기업 주식의 분산소유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공개한 기업에 대하여 여신규제완화,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종업원지주제 도입, 국민주 보급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투자자에게 적은 자본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잉여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제2장

자본시장의 구조와 한국거래소의 역할



1. 한국 자본시장의 생성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주식거래가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다. 하지만 현대적 형태의 증권시장은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을 개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상장회사는 12개로 조흥·저축·상업·흥업은행 등 4개의 은행과, 경성방직·대한해운공사·대한조선공사 등 8개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었으며, 건국국채도 3종류가 함께 거래되었다.

초기에는 모두 사람들의 손으로 주식을 매매했다. 거래소에 모인 중개인들이 주문표를 거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거래소 직원은 조건이 맞는 주문끼리 격탁을 두드려 가격을 결정했다. 주문은 전화를 통해 증권사 본·지점에서 접수한 뒤 거래소로 전달하였다. 지금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인터넷을 통해 주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주가를 칠판에다 직접 적었다. 종목별 거래상황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시황 방송을 통해 공지되었다.

그 동안 구멍가게 수준이던 주식시장은 1970년대부터 전환기를 맞았다. 우리 정부는 증권시장을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장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 결정판이 1972년 제정된 기업공개 촉진법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법시행 이후 상장 러시가 일어났다.

1970년대 48개에 불과했던 상장사는 1978년 356개사가 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식거래대금은 연간 429억 원에서 1조 7,415억 원으로 약 40배로 불어났다.

1978년에는 기존의 격탁매매 방식이 폐지되고 육각형 모양의 단상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포스트 매매’가 등장했다. 이듬해 증권거래소가 명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였다.

1980년대에는 포항제철·한국전력·국민은행·전기통신공사 등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이 국민주 형태로 보급되면서 주식대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또 세계적인 현상으로 저금리·저유가·저환율 등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1989년 3월 말 KOSPI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함으로써 한국 증시도 크게 성장하였다.

1992년 초부터 정부는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최초로 허용하였다. 당시 외국인 투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 공공기업은 8%였다. 하지만, 1998년 핵심 기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외국인 취득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 증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회사의 방만한 대출관행 등이 원인이 되어 한보·삼미·기아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이로 인해 KOSPI 지수는 한때 280포인트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벤처기업 투자 열풍이 불면서 코스닥시장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열풍은 2000년 들어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2003년부터 적립식펀드에 대한 투자열풍이 불면서 증권시장은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2008년 10월 말에는 KOSPI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였다.

1992년 증시개방 당시만 해도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인 FTSE는 2009년 9월 한국 증시를 선진국시장(Developed Market)에 편입하였고, 또 2012년 8월과 9월에는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2013년 7월에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었다.

2014년에는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 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ETN시장이 개설되었다.

2018년 3월에는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 완화 및 코스닥 성장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양 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KRX300선물 및 코스닥150옵션을 상장하였다.

2. 한국 자본시장 구조

가 증권시장

(1) 거래소시장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 있다. 2005년 1월 통합 이후 과거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였던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개설·운영하였던 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새로이 초기 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인 코넥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을 계속적으로 분리·운영하는 이유는 각각의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 또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들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정부의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에 부응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거래규모 및 질적인 면에서 세계의 신시장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정부의 차세대성장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하여 초기 중소기업은 진입이 곤란한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또한,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동일한 취급을 받으나, 투자자를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축소하는 등 다른 점이 있다.

(2) 장외시장: 프리보드시장

프리보드란 거래소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의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호가중개시스템이며, 2005년 7월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명칭을 프리보드로 바꾸게 되었다.

프리보드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규제가 적고 비용이 저렴한 시장이다. 하지만 프리보드시장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거래대상이 되는 유망 벤처기업의 주식이 별로 없고 동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이 낮아서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거래규모가 매우 적고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파생상품시장

(1) 장내파생상품시장

1996년 5월에는 증권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KOSPI20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시작되었고, 1997년 7월부터는 주가지수옵션거래가 개시되었다.

또 1999년 4월에는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미국달러 선물 및 옵션, 그리고 금(金)선물 등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었고, 9월에는 국채선물거래가 개시되었다.

2006년 5월에는 일본엔선물과 유로선물, 2015년 10월에는 위안화선물을 도입함으로써 주요 통화에 대한 선물시장을 모두 개설하게 되었다. 이어 2007년에 주요 개별주식에 대한 선물 상장, 2008년 12월 10년 국채선물, 2010년 9월에는 미니금선물을 상장하였으며, 2014년 11월 변동성지수선물, 2015년 10월 배당지수선물 및 11월 코스닥150선물, 2017년 6월 ETF선물, 2018년 3월 KRX300선물, 코스닥150 옵션을 상장하였다.

한편, 파생상품시장 개설 이후 수년간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2) 장외파생상품시장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시장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금리관련 파생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신용 관련 파생상품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통화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참가자는 외국환은행이며, 대부분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기업들의 환리스크 헤지 수요와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금리스왑, 금리옵션, 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금리스왑은 국내 대형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었다.

한편, 2014년 6월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2018년 말까지 2,469조 원의 원화 이자율스왑거래가 청산되고 있다.

3. 한국거래소의 기능과 역할

가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동 거래소는 2005년 1월 기존의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과 한국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를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한국거래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국거래소의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분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분부와 코스닥시장분부는 서울에 설치되어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거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동 거래소의 이사회로부터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말 현재 한국거래소의 회원 수는 총 82개사이며, 증권회사, 선물회사, 그리고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요업무

(1) 유가증권시장 등의 시장개설·운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ETF·ETN·ELW시장과 기타 시장을 개설·운영하며, 각 시장의 종합시세, 매매동향, 거래실적 등의 정보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보다 상장조건을 완화하여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자 개설·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및 시장관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체결 및 결제, 시세 공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유형 및 품목 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에서의 가격·금리변동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장으로 현재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국채선물, 통화선물·옵션, 금·돈육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2) 상장(Listing)

증권의 상장이란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자격을 부여받은 증권을 상장증권이라고 한다.

상장에는 ①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하여 거래되게 하는 신규상장, ②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된 주권을 상장시키는 재상장, 그리고 ③상장법인이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주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신주상장과 변경상장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 부동산투자회사 주권, 선박투자회사 주권, 투자회사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의 종류별로 상장요건을 두고 있는 한편, 증권발행회사의 경영부실 등으로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해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기업내용공시

기업내용공시란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또는 증자 등을 공시를 통하여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상장기업은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공평하게 공개하여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고 주가에 반영시킴으로써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내용공시는 증권시장의 완전경쟁 상태인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을 위한 기본요건이며 투자자에 대한 의무이다.

(4) 시장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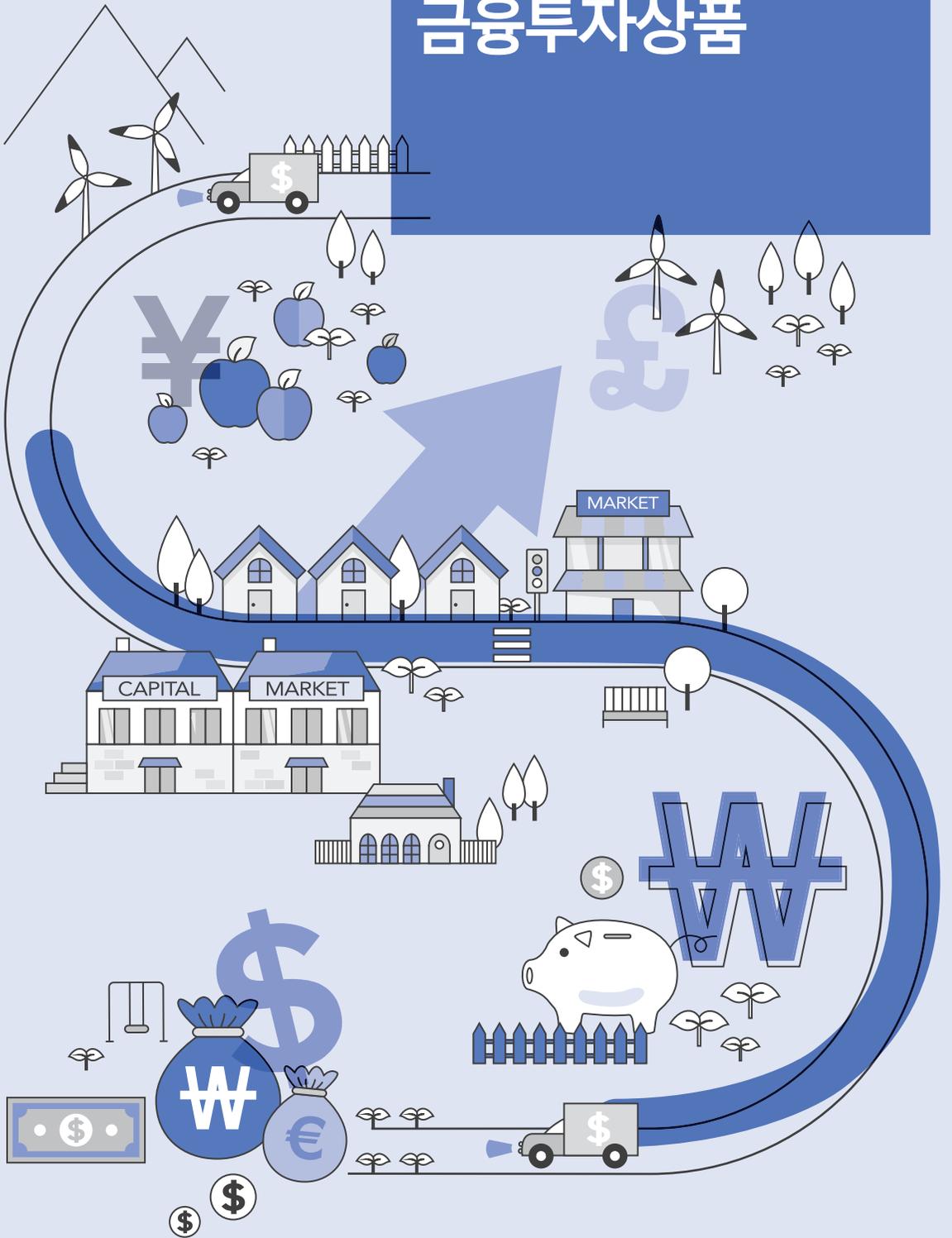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규제하고 회원과 투자자 또는 회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를 통하여 시장 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시장 간의 연계 감시 및 회원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회원과 투자자,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거래소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무료로 조정해 주고 있다.

(5) 시장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KOSPI지수나 KOSDAQ지수와 같은 주가지수를 실시간으로 산출하여 공표하기도 하고, 신문지상에 게재되는 주식시세표를 산출해서 배포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주문상황 및 거래내역 등을 투자자에게 공표하기도 한다.

제3장

금융투자상품



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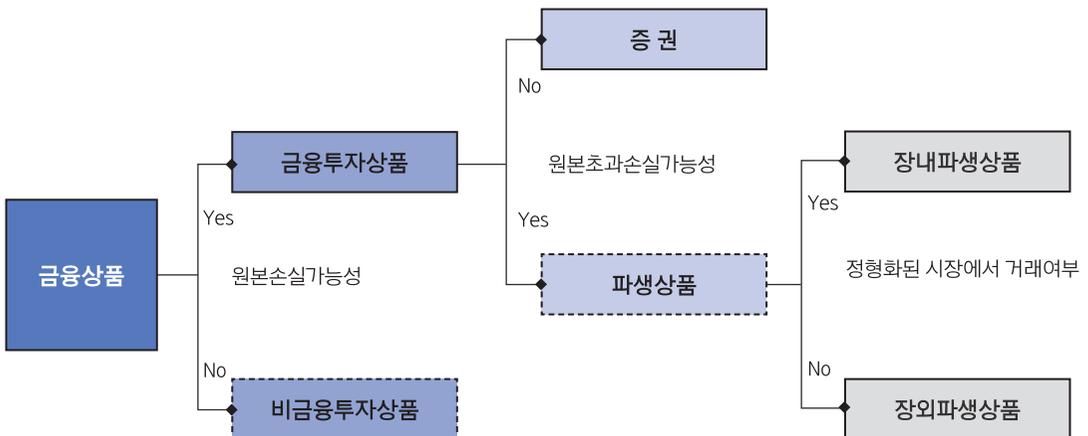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에 금전 등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증권이고, 장래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금전 외에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시킨 것은 파생상품거래에서 금전에 의한 차액결제와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상품의 구조나 유통과정에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그 손실의 최대 금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있으면 파생상품으로, 최대 손실이 원본으로 한정되면 증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파생상품은 거래소와 같이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장내파생상품, 그렇지 않으면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2. 증권 종류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증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다. 즉, ①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과 ②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 그리고 ③신탁수익증권과 신탁형집합수익증권과 같은 수익증권 ④국내증권예탁증권(KDR), 외국증권예탁증권(GDR, ADR) 등 증권예탁증권 ⑤투자계약증권 ⑥파생결합증권이 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CIS), 구조화증권(Structured Product)과 같은 신종 증권도 증권에 포함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 개념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나, 만기가 짧고 금리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미미하여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적어서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되며, 원본보전신탁의 수익권을 제외한 모든 신탁(처분신탁, 운용신탁,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증권에 포함된다. 기업어음(CP)은 적정한 형식(조폐공사 발행 용지 사용)을 갖춘 모든 CP를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증권의 종류와 개념

구분	개념
지분증권	주주의 권리,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로서 i)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ii)「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iii)「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과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 등이 표시된 것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자신과 다른 투자자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위에 열거한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3. 증권 발행방법

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1)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기업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공개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이는 소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대중에게 분산시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상증자는 이미 설립되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이자비용 등과 같은 정기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둘째,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소멸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주식발행은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넷째, 주식발행을 통한 거액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하지만 새로운 주주들의 유입으로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는 단점도 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증권의 발행주체인 주식회사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 및 증권발행시의 위험을 부담하고 사무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인수기관으로 구성된다.

(2)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식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집단적이고 대량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채권은 앞에서 말했듯이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채권의 소유자가 채권자로서 발행인의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고, 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채권은 발행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채권의 발행시장은 발행자, 투자자, 인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채의 발행구조를 살펴보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발행사무 일체와 총액인수 방식으로 인수하게끔 한다. 이후 매수자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들로서 매수방법은 거래은행에 매매체결 내용을 통보하고 발행 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나 증권 발행방법

증권의 발행은 발행위험을 발행자와 인수자 사이에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어진다.

(1) 직접발행

직접발행은 증권발행자 자신이 증권발행에 따른 위험, 즉 공모발행 시 미인수잔여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발행방식이며, 증권발행자 자신이 발행증권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직접발행은 다시 증권발행자 자신이 발행사무까지도 담당하는 자기모집과 발행사무만을 중개인에게 대행시키는 위탁모집으로 나눈다. 자기모집은 발행사무가 비교적 간편한 경우에 이용되며, 위탁모집은 발행사무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증권발행자가 모집주선인에게 발행사무만을 위탁하는 것이며, 모집주선인은 증권발행에 따른 분매(Distribution)업무만을 담당하고 발행증권의 미소화분은 발행자에게 되돌려 준다. 모집주선인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발행인으로부터 받는다.

(2) 간접발행

간접발행은 인수자(Underwriter)가 증권발행자로부터 발행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전문적 지식과 조직을 가진 전문기관에 발행사무를 의뢰하여 발행하므로 모집발행이라고도 한다. 인수는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단순히 취득(Acquisition)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업자가 유가증권의 공정가격형성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였다가 분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발행은 증권인수방식에 따라 이를 다시 총액인수방식(Firm Commitment Underwriting), 잔액인수방식(Stand-by Underwriting), 전부 아니면 무효방식(All or None: AON) 등으로 구분한다.

총액인수방식은 인수인이 사전에 발행자와 약정한 가격으로 증권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이에 소정의 이익을 붙여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인수인은 인수수수료나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Bid-Ask Spread)을 발행위험과 발행사무대행의 보수로서 챙기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잔액인수방식은 인수인이 일차적으로 발행증권을 발행인과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반대중에게 매각한 다음 미소화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서, 이 때 인수인은 발행액 전액에 대한 인수 및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다 공모와 사모

주식의 모집방식에는 공모(Public Offering)와 사모(Private Placement)가 있다. 공모는 증권인수인이 증권을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새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모집과 이미 발행된 증권을 판매하는 매출이 있다. 공모의 경우 인수하는 조건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한다. 사모방식은 증권발행인이 직접 특정 소수의 인수인과의 교섭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공모발행이라고도 한다.

라 기업공개와 상장

기업공개와 상장은 법적근거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현실적으로 주식을 공개매각하고, 그 주식은 상장시키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기업공개(IPO)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소유토록 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주식공개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주식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の方法으로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파는 모집방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일정수량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파는 매출방식이 있다.

기업을 공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①당해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향상되고, ②주식의 가치가 공정하게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

(2) 상장(Listing)

상장이란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거래소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식만을 상장시키고 있다. 주식이 상장되면 당해 법인은 주요 경영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이 상장된 기업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지고 주식의 유동성 증대와 공정한 가격 형성 등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효과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제품판매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4. 파생상품의 종류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거래장소, 거래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초자산에 따라서는 금리, 통화, 주식 및 실물상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거래형태에 따라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스왑선물·스왑옵션 등 2차 파생상품들도 있다. 거래장소에 따라서는 장내 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된다.

가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

(1) 선도계약(Forwards Contracts)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일에 대상상품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장외거래를 말한다. 선도계약의 일종인 선물환(Forward Exchange)은 가장 전통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에 특정통화를 일정환율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2) 선물(Futures)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상품이다.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그 상품의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거래는 표준화된 특정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3) 옵션(Options)

장래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현재시점에서 매매하는 거래이다. 옵션은 리스크를 매입자에서 매도자에게 전가하며, 옵션매도자는 리스크 부담을 대가로 매입자로부터 옵션가격(프리미엄)을 받는다. 옵션의 기본 유형에는 매도옵션(Put Options)과 매입옵션(Call Options)이 있다.

(4) 스왑(Swap)

두 채무자가 통화 및 금리 등의 거래조건을 서로 맞추는 것이다. 외화차입비용 절감을 위해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왑,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 이자지급조건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하는 이자율스왑 등이 있다.

나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1) 장내거래파생상품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거래소(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의 규정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어 시장에서는 가격만 결정되고 대금지급 등은 청산소를 통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청산기구를 통한 신용위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2) 장외거래파생상품

거래소시장이 아닌 곳에서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단위, 상품의 품질, 인도 시기, 대금결제방법 등 모든 계약조건을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계약으로 선도계약의 일종인 선물환과 스왑, 옵션 등이 주로 장외에서 거래된다.

가장 전통적인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은 선물환, 이자율스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타겟포워드, KIKO, 스노우볼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회사 간 거래,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거래(대고객 거래)로 구분된다.

장외파생상품은 청산기관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장외거래는 거래조건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의 재구성 및 전가가 용이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하게 되어 거래소(장내)거래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범위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도입 가능한 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5. 장내거래 금융투자상품

가 장내거래 상품의 특징 및 종류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고 거래가 원활하고도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래소는 발행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증권의 분산소유 정도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시장에는 2018년 말 현재 2,264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상품은 그 종류나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을 비롯하여 국공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 주식관련사채, ETF, ELW나 ETN과 같은 신종증권 등 여러 종류의 증권이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초기 중소기업 그리고 차세대성장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나 장내거래 신종증권

(1) 상장지수펀드(ETF)

ETF(Exchange Traded Fund)란 KOSPI200과 같은 특정 지수나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유통)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ETF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인 인덱스 펀드에 개별 주식의 높은 환금성이 더해진 펀드이다.

예를 들어, 철강업종 ETF라면 철강업종 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이 되며 따라서 철강업종 ETF를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철강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ETF는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에 주식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고, 투자금액,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2)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는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 뒤에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이다.

발행 주체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금융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사에만 한정되고, 대상종목은 유동성이 풍부한 KOSPI100 구성 종목과 주식 바스켓, KOSPI200 지수 등이다. 만기는 최소 3개월 이상 3년 이내이다.

(3) 상장지수증권(ETN)

ETN(Exchange Traded Note)은 KOSPI200과 같은 특정 지수나 특정자산의 가격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이다.

ETN은 증권회사가 무담보 신용으로 발행한 상품으로서 변동하는 지수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 가치를 투자자에게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증권(Note)이다. 그러므로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채권, 발행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ELS와도 다르며 실물 자산이 있는 펀드(Fund)와도 구별된다.

(4)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투자신탁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며, 리츠(REITs)라고 칭한다. 일반투자자는 리츠 주식을 공모에 참여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리츠는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통한 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수익성, 안정성,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6. 간접투자 금융상품

가 수익증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또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문투자기관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운용실적대로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

수익증권은 계약형투자신탁으로 실적배당을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단기금융상품펀드, 혼합자산펀드, 특별자산펀드가 있다. 또한, 증권(주식)의 투자비율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이 있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및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실적과 투자전략, 투자설명서 등을 점검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엠브렐러펀드(Umbrella Fund)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이는 하나의 약관 아래 여러 개의 하위(Sub)펀드가 있는 모양이 마치 우산 같다고 해서 엠브렐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하위(Sub)펀드로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수익증권, 안정형수익증권, 성장형수익증권, 정보통신펀드, 코스닥전용펀드, 공모주전용펀드 등 다양하게 편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가입한도 및 저축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 적립식펀드

적립식펀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한 가지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상품이다. 즉, 은행 정기적금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고 만기에 목돈을 찾는 형태의 상품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저축기간은 1년에서 10년으로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적립식펀드의 장점은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정기적금처럼 분산투자해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적은 주식을 사게 되므로 주식의 평균매입단가를 낮춰 투자할 수 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금리 및 주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와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실적 및 투자전략, 투자설명서 등을 점검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및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기에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한다.

라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골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증권회사가 도맡아 구성하고 운용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활성화되면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 자문형, 펀드형이 있으며, 저축한도 및 저축기간에 제한이 없다.

마 인덱스펀드(Index Fund)

인덱스펀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인덱스펀드 구성에 있어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인덱스를 선정하는 것이다. 인덱스마다 구성종목과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인덱스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자금액, 투자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중도환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인덱스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화 실현, 증권매매에 따르는 비용 절감, 저렴한 운용 비용, 투자자 스스로에 의한 운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목표 인덱스보다 낮은 투자성과, 구성종목 교체의 곤란성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운용사의 능력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바 뮤추얼펀드(Mutual Fund)

뮤추얼펀드(투자회사)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개인, 법인 등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전문가(자산운용회사)에게 맡겨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투자토록 한 뒤 그 운용성과를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한다.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나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실제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전문회사가 담당하며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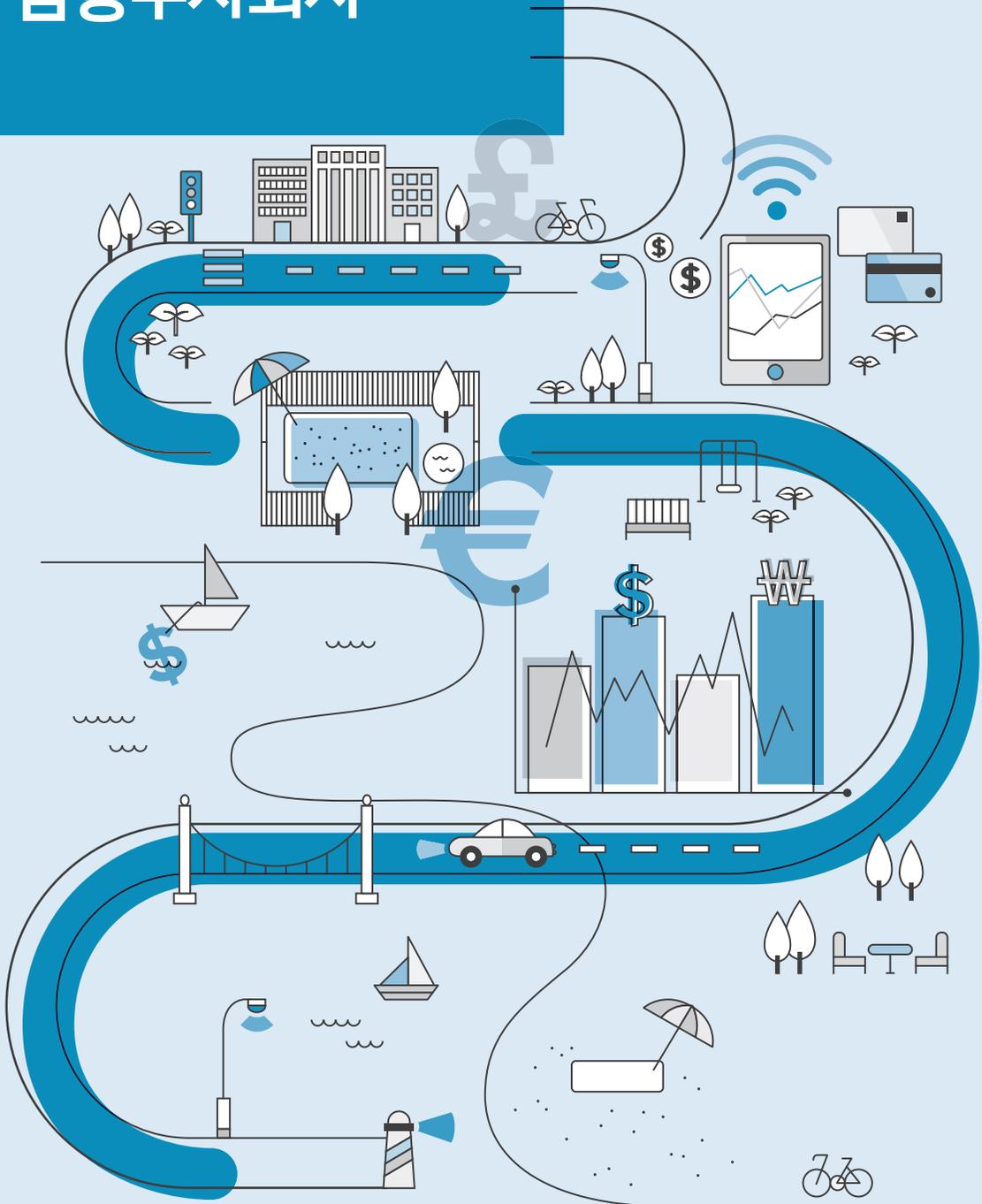
뮤추얼펀드에는 간접투자상품과 회사형 투자신탁이 있으며,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은 펀드별로 정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 헤지펀드(Hedge Fund)

헤지펀드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투자대상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투자자인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는 헤지펀드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식이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가입을 한정하고 있다.

제4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회사



1. 금융투자업의 종류

가 금융투자업의 분류

금융투자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자매매업(Dealing)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증권의 인수 및 매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회사는 자기매매업무를 통해 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에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투자중개업(Brokerage)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직접 청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일, 그리고 증권의 발행·인수에 관한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선물회사의 선물거래업, 증금사의 중개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탁매매업(Brokerage)은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로서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위탁매매업무는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대리 및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탁매매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로 고객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이다. 매매거래에 따른 손익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며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매매의 중개·대리는 타인 간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거나 고객을 대리하여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 동 업무는 증권회사가 명의상이나 계산상으로 매매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비회원인 증권회사는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고객의 위탁매매주문을 중개·주선·대리해주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회원인 증권회사와 배분한다.

(3) 집합투자업(Collective Investment)

집합투자업이란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자금을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처분하여 남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펀드투자처럼 여러 사람한테서 모은 자금을 제3자가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4)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투자판단이라 함은 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5)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신탁업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금융자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금융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는 6가지 금융투자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며,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의 종류별로 각각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겸영인가를 받으면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

증권회사라 함은 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인수에 관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

증권회사는 증권 및 채권과 관련된 위탁매매, 발행 및 인수, 그리고 자기매매 등을 영위하며 이외에도 펀드 및 신종증권 판매, CMA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증권회사라는 표현보다는 투자은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증권회사의 개념과 기타 투자업무를 통합한 영역이다. 즉, 투자은행은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 이외에 인수합병(M&A),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age), 부동산투자, 증권예탁증서(DR)의 발행, 기업공개(IPO), 부실기업인수 등 다양한 투자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선물회사(Futures Company)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위탁매매 등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해외선물거래 포함)의 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영위한다.

선물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등과 관련한 고객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이나 임직원의 위법·위규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주요 선물상품으로는 KOSPI200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주식상품, 금리상품(3년 국채선물), 통화상품(달러선물, 엔선물), 금 및 돈육선물과 같은 일반상품이 있다. 해외상품으로는 Dow Jones, S&P500, T-Note, T-Bond, FX Margin Trading, Euro FX 등이 있다.

다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이다. 뮤추얼펀드의 구조는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상법상의 회사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축으로 하여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판매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회사, 그리고 뮤추얼펀드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실제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회사가 한다.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 자산을 주식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과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라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고객에게 투자에 관한 지식, 판단, 자산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에게 증권에 대한 각종 전문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일임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는 회사이다.

투자자문업에는 단순 투자자문업무와 투자일임업무가 있다. 투자자문업무는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고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투자일임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대행하는 업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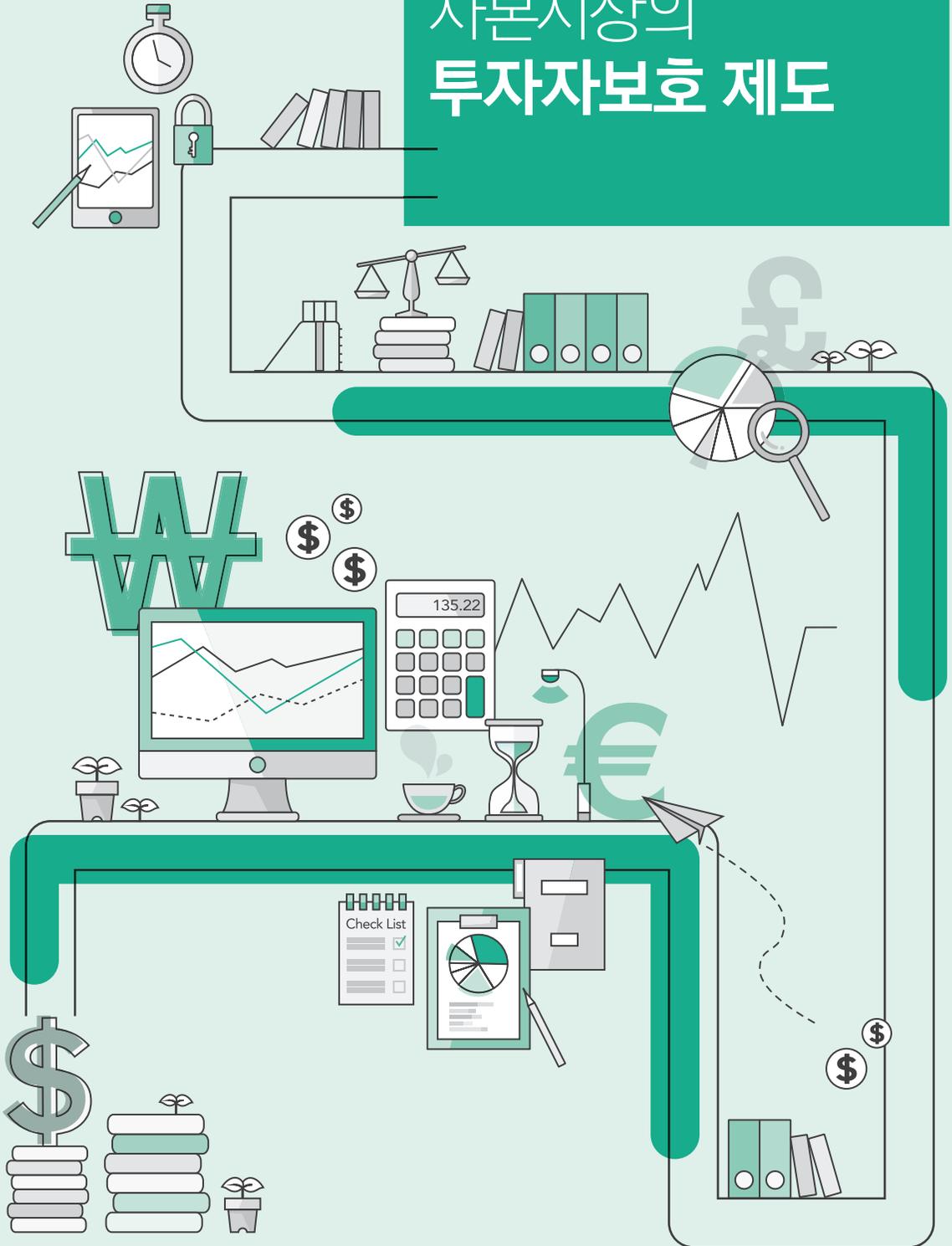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운용전문인력의 도덕성과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객재산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마 신탁회사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또한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업무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5장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 제도



1.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

가 정부에 의한 공적규제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기구로는 공적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고,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로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의 정부조직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조직이다.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국내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유동성부족이나 손실급증으로 인한 재무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자의 재산을 차질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규제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인의 임명직 위원과 4인의 당연직 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증권선물위원회

증권 및 선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의·의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내부조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및 금융위원회 위임업무 등을 수행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과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당시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설립되었다.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자 공법인으로서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분담금,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에는 원장,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 그리고 회계전문가인 전문심의위원 1인을 두며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한다. 검사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거래소에 의한 자율규제

한국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387조 및 회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가입, 탈퇴,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회원 및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8호 및 제402조 내지 제405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및 파생상품의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업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감시규정에서 시장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 및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를 열거하고 심리 및 감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심리 및 감리 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402조에서 시장감시, 심리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징계는 물론 장내에서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과 고객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 규제체계

구분	규제대상	근거법규	규제수단
발행시장	기업	발행공시규제(증권신고서)	형사 + 민사 + 행정(과징금)
	금융투자자	인수행위 규제(Due Diligence 등)	민사 + 행정(과징금)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기업	계속공시 규제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서 등)	형사 + 민사 + 행정 (과징금)
판매행위	금융투자자	투자권유 규제(설명 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형사 + 민사 + 행정(과태료)
거래행위	모든 사람	불공정거래 규제(미공개, 시세조종,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형사 + 민사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가능)

2. 기업내용공시

가 기업내용공시의 개념

기업내용공시란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어떤 회사의 가치, 즉 주식 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싶다면 이 회사가 빚이 많은지, 수입은 안정적인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어떤 증권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소수만이 독점하고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기업공시자료는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시장 공시자료로 구분된다.

나 발행시장공시

발행시장공시란 증권이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공급되는 단계에서 모집·매출되는 증권과 당해 증권의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 전에 미리 심사를 받기 위한 공시서류인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발행기업은 발행기업 및 발행증권에 대한 정보를 담은 투자권유문서인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는 투자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살펴보고 투자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하고, 모으고자 하는 돈의 액수가 10억 이상인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신고서는 어떤 증권을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는지는 물론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따르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가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증권을 발행한다면, 이 증권에 투자하기에 앞서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다 유통시장공시

유통시장 공시란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의 취득·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를 의미한다. 유통시장의 공시로는 다음과 같이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및 공정공시가 있다.

① **정기공시:** 기업이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자료이며 기업의 재무상황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결합재무제표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경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요사항보고서라고 한다. 상장법인은 부도 및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해산, 증자 및 감자,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자기주식(신탁계약) 취득(체결)·처분(해지), 주채권은행으로부터의 공동관리, 해산·청산, 파산신청요구, 중대소송의 제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항보고서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경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수시공시:** 상장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에 대한 공시로서 적시공시(Timely Disclosure)의 성격을 가지며, 수시공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사유발생 당일 또는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회공시:** 수시공시를 효율화하고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증권 발행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조회공시 대상은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 주가 또는 거래량 급등 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 등이다.

⑤ **공정공시:**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는 i)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 ii)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iii)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iv)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 정보 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등이다.

3.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등 규제

가 투자권유 규제

투자권유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권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앞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인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다음, 그 정보에 기초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 정보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투자광고 및 청약의 권유 규제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투자광고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사실을 알리거나 증권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청약의 권유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소극적으로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우선 적극적 규제로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반드시 투자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극적 규제로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다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은 정보의 관리를 본질로 하는 금융업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다양한 이해상충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자기매매업무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동일 법인 내에서 겸영하는 경우 그 위험은 특히 크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공시 및 절차적·구조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공시(Disclose), 관리(Control), 거래단념(Avoid)의 3단계 방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4.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규제

가 시세조종금지

시세조종이란 자본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법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이를 모르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식매매 행위이다.

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미공개정보이용이란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증자, 우량 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 등)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 등)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주식투자자로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투기장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 부정거래행위 금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최근 자본시장은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새롭고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적절하게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는 크게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나뉜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반드시 벌금이 병과되도록 하였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기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바 신고·공시의무위반

상장법인의 재산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 변동사실을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사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5% Rule)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 등을 6월 이내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사에 동 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5. 금융투자상품 거래관련 분쟁조정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책임의 귀속을 두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간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회사 또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임직원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민법 제731조상 화해)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이미 입은 손실을 보전할 것을 사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 또는 사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당해 조항(손실보전 등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합의된 내용의 이행이 문제될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한 불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위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관할권 및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자본시장의 분쟁조정기구별 업무범위

구분	관할 범위	근거법규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전체의 분쟁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51조
소비자원	소비자 관련 분쟁(타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대상 제외)	소비자기본법제35조, 제60조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	자본시장법 제377조
금융투자협회	동 협회의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	자본시장법 제288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자본시장

발행일 | 2019년 7월

발행인 | 정지원

발행처 | 한국거래소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여의도동)

<http://www.krx.co.kr>

STAFF

글 | 조정석 (한국거래소)

디자인 | KILLING MARIO

협찬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Korea Council for Investor Education

한국거래소 | 알고 싶어요 시리즈 1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 알고 싶어요 시리즈 2

주식시장

한국거래소 | 알고 싶어요 시리즈 3

채권시장

한국거래소 | 알고 싶어요 시리즈 4

파생상품시장